

경기도남부경찰청

2024. 3. 14.

제 2024-00082 호

수신 : 정이든 귀하

제목 : 수사결과 통지서(고소인등·불송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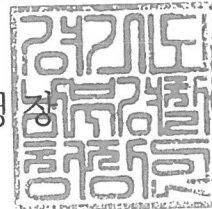
귀하와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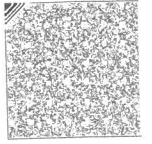
접수일시	2023. 12. 19.	사건번호	2023-006728
죄명	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)		
결정일	2024. 3. 14.		
결정종류	불송치 (혐의없음)		
이유	별지와 같음		
담당팀장	여성청소년수사계 경감 안병위	☎	031-888-2345

※ 범죄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

- 범죄피해자 구조 신청제도(범죄피해자보호법)
 - 관할지방경찰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신청
- 의사상자예우 등에 관한 제도(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)
 - 보건복지부 및 관할 자치단체 사회복지과에 신청
- 범죄행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명령(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)
 - 각급법원에 신청, 형사재판과정에서 민사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
- 가정폭력·성폭력·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구조
 - 여성 긴급전화(국번없이 1366), 보건복지상담센터(국번없이 129) 등
- 뺑소니·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 구조제도(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)
 -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(1544-0049)에 청구 가능
-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이용한 피해자 구조제도
 -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, 지역별 공단지부에 문의
- 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(국번없이 132 또는 공단 지부·출장소)
 - 범죄피해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(손해배상청구, 배상명령신청 소송대리 등)
- 범죄피해자지원센터(국번없이 1577-1295)
 - 피해자나 가족, 유족등에 대한 전화상담 및 면접상담 등
-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접수제도
 - 국민신문고 www.epeople.go.kr,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
-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접수제도
 - www.humanrights.go.kr, 국번없이 1331

경기도남부경찰청





【별지】

【결정종류】

불송치(혐의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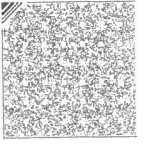
【피의사실의 요지와 불송치 이유】

[피의사실]

- 피의자는 2023. 11. 24.부터 2023. 12. 7. 15:40~17:00경 안양시 소재 피의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(여, 4세)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 부위를 손으로 접촉하여 추행

[불송치 이유]

- 피해자는 여자화장실에서 피의자가 '쉬꼬(음부 지칭)'를 닦아주다가 손에 찢린 적이 있었다는 진술이다.
- 피의자는 피해자가 나이가 어려 여자화장실에 데려다 준 적은 있으나 용변 처리를 도와주거나 음부 부위를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다.
- 태권도장 CCTV 분석 결과, 피의자와 피해자가 도장 내에서 후문을 통해 화장실 방면으로 이동하여 수 분 뒤 돌아오는 장면 등은 확인되나 여자 화장실을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는 없어 피의자의 범행 여부는 확인 불가하다.
- 진술분석 전문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 판단 불능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다.
- 피의자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 피의자의 진술은 '진실 반응'으로 확인된다.
- 피의자의 범행을 목격한 다른 원생 등 목격자 확인할 수 없다.
-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.



※ 결정 종류 안내 및 이의·심의신청 방법

<결정 종류 안내>

-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결정입니다.
-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.
- 각하 결정은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,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·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하는 결정입니다.

<이의·심의신청 방법>

- 위 결정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자(고발인은 제외)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1항에 의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이 있는 때 해당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에 따라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게 됩니다.
- 수사 심의신청 제도(경찰민원콜센터 국번없이 182)
- 수사과정 및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, 관할 시·도 경찰청 「수사심의계」에 심의신청



